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 설치〉
■ 이달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046호)

2025. 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1
IV . 검토의견	2
1.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 설치(안 별표 1)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달회의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5. 6. 24.

다. 회 부 일 : 2025. 6.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건을 위하여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현행법에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III.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회의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6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 설치(안 별표 1)

현행	개정안
○ 별표 1 <신설>	○ 별표 1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

현행법 제4조¹⁾에 따라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특정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세입으로 특정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이달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670호)의 의결을 전제로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 별표에 추가하려는 것임.

1)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의 주요 내용 >

구 분	내 용
법률명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회계명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
세 입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른 예비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 차입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원
세 출	◦ 피해자에 대한 생계·의료·주거 등 지원 ◦ 주택·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복구 ◦ 산림 복구, 복원 및 관리 ◦ 지역경제 및 산업 활성화 지원 ◦ 관광·문화·스포츠 시설 복구 및 확충 ◦ 산불대응장비 및 인프라 확충 ◦ 그 밖에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에 필요한 사업
관 리	◦ 행정안전부장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초대형산불피해구제법안”이라 함)은 경북·경남·울산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건을 위하여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상북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경남 산청군·의성군·하동군, 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 등 8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는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8개 시·군의 피해 현황을 인명피해 183명(사망 27명, 부상 156명)²⁾, 재산피해 총 1조 818억원(사유시설 5,175억원, 공공시설 5,643억원)으로 보고하고 있음.

이는 국내 산불 피해 역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되었으며, 막대한 산림 자원 소실뿐만 아니라 산업 기반의 붕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영업 중단, 주민 생계 및 주거의 파괴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심대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초래하여 해당 지역의 존립 기반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임.

따라서 개정안은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2025년 3월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의 안정과 회복을 도모하며, 지역 경제 회복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 정주환경 혁신과 공동체 기반 재구성을 통해 피해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동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산불 특별회계 용도로 제시한 피해자 생계·주거 지원, 기반시설 복구 등은 일반회계 재난대책비 사업

2) 공무원 1명과 진화대원 3명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임.

으로 既지원 중이며,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비비 등으로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한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별도의 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운영되어 칸막이식 재정운용에 따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어, 현행법 제14조³⁾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① 특별회계 신설의 상대적 효과성, ② 특정 세입·세출 연계로 인한 별도 회계처리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법」 개정안 심사 시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에 따라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가 위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특별회계 신설의 상대적 효과성’과 관련하여 초대형산불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생계·의료·주거 등 지원 및 주택·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복구 등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외에도 지역경제 및 산업 활성화

3) 「국가재정법」 제14조(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지원과 관광·문화·스포츠 시설 복구 및 확충 등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특별회계 신설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경남·울산의 3개 시·도의 8개 시·군에 대해서는 긴급재정지원으로 「지방교부세법」 제9조제1항제2호4)에 따른 특별교부세(재난안전특교세) 307억원과 구호사업비 3.8억원이 지원되었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일반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에 따라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복구비 총 1조 8,809억원(국비 1조 2,136억원, 지방비 6,673억원)의 복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동 법에 따라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 지원을 할 수 있음⁵⁾을 고려할 필요가

-
- 4) 「지방교부세법」 제9조(특별교부세의 교부) ① 특별교부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부한다.
 2.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한 경우: 특별교부세 재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이자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있음.

또한, 2025년 5월 1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3.3조원 규모의 재해·재난 대응 예산⁶⁾이 마련되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특정 세입·세출 연계 등으로 인한 별도 회계처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의 재원 중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른 예비비’의 경우 정부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예비비의 성격상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재원으로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며, 특정 세입·세출의 연계 측면에서도 연계성이 크지 않아 보일 뿐만 아니라, 현재 예비비를 재원으로 명시하고 있는 입법례가 없는 것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난안전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⁷⁾ 전입금’의 경우에도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產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1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제66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금융상·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6)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1.4조원) +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1.9조원)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재난관리기금의 적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적립하는 기금으로, 재난안전법 시행령⁸⁾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는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한편, 개정안은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소관인 초대형산불피해구제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u><신 설></u>	별표 1 <u>24.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 법」</u>

문의처

02)6788-5152